관계부처 합동	보 도 자 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2021년 6월 1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6.1.(화) 오전 10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1. 5. 31(월)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담당과장	서기웅 과장(044-203-4410) 조성환 과장(044-205-3508)	담 당 자	전성철 사무관(044-203-4419) 홍경주 사무관(044-205-3508)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정부(행정안전부), '21년 하반기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 -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추진 -

□ 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 인구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6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절차와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20.12월「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 공포(△인구감소지역 지정 근거 마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지원시책 포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규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6월 9일(수)부터 시행**된다.

□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한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 하반기 중 지역의 고령인구, 유소년인구,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등을 고려한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행정·재정적 사항과 지원근거**도 마련되었다.

○ 시·도는 이를 근거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에 대한 지원사항이 포함된 시·도 발전계획(5년 단위)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정부는 시·도가 수립한 발전계획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3~'27)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보조사업을 추진 시 일정 부분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정**할 수 있으며, 각 사업들은 **상호 연계성을 갖고 추진될 예정이다.**

□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 지역 주도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지정 예정인 인구감소지역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기존 부처 보조사업 외 지역에 특화된 사업의 지원도 '22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붙 임】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전성철 사무관(☎044-203-4419),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홍경주 사무관(☎044-205-350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제2조의3 (인구감소 지역의 지정 등)	① (정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② (관계기관 협의)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③ (시·군·구 의견청취) 시·도지사는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도에 속한 시·군·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절차)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장의 의견 청취 → 행안부 장관은 관계부처 및 시·도지사와 협의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 행안부장관 지정·고시
제15조의11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	① (재·행정적 지원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다음 각 호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통시설, 상하수도 시설, 생활인프라 등 기반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을 위한 지원 2. 각급 학교, 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유치 지원 3.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 확충, 농축수산물 등 특산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한 지원 4.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주택 개수·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 5. 인구감소지역 지원 사업의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의 연계·제공·활용·분석, 의사결정 및 협업에 관한 업무 지원 6.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 ② (공모사업 우선배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와 관련된 사업을 공모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일정 부분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③ (연계성 확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들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